

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-37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 .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·견학·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
-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근거마련(안 제23조2)
- 나.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확대(안 별표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“동사무소”를 각각 “동 주민센터”로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 (사기진작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자치위원·자원봉사자·강사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·견학·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·자원봉사자·강사에게 『동두천시 포상조례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총 무 과
입 안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총 무 과 총 현 섭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주민자치담 당 경 자
자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유 수 회 860-2090

[별표]

주민자치센터 사용료·수강료(제10조 제3항 및 제5항)

1. 기본시설사용료 : 무료

2. 수강료 징수기준

구 분	기 준 (1주 수강시간)	수강료(월)	비 고
교양 · 취미등 문화강좌	2시간 이하	15,000원 이하	재료비·실습비는 별도
	4시간 이하	20,000원 이하	
	6시간 이하	25,000원 이하	
	8시간 이하	30,000원 이하	
생활체육 등 (에어로빅, 헬스, 기타)	1개월	20,000원 이하	

※ 다만 강좌개설시 전문강사(외국인강사 등) 초빙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조정 징수할 수 있다

3. 수강료 감면기준

구 분	감 면 대 상	감면비율
수 강 료	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장애인 3. 「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4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노인	50%